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하나생명보험

01.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목차

제 1 조【목적】	3
제 2 조【용어의 정의】.....	3
제 3 조【유동화 신청 및 취소】	5
제 4 조【유동화 중지 및 재신청】	6
제 5 조【유동화 금액의 지급사유】.....	6
제 6 조【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6
제 7 조【유동화 금액 지급절차】.....	8
제 8 조【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8
제 9 조【특약의 보험기간】	8
제 10 조【특약의 소멸】.....	8
제 11 조【보험계약대출】	9
제 12 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9
 별표 1 유동화 금액 지급기준표	 10

01.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약관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계약과 관련해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계약에 부가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사망, 장애 또는 생존 등의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주계약**: 기본이 되는 보험계약으로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종국연령**: 주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시 사망보장기간 종료시점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최종 나이를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6.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용어

- 가. **사망보험금 유동화**(이하 ‘유동화’라 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재신청**: 이 특약의 소멸사유 중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이 특약의 효력이 없게 된 이후, 다시 유동화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기본보험료**: 유동화 신청 전 주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유동화 신청 전 주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감액 등으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라. **유동화 지급 해당일**: 제7조(유동화 금액 지급절차) 제1항에 따른 최초 유동화금액을 지급한 날 및 유동화 기간 이내의 매년 ‘최초 유동화금액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말합니다.
- 마. **매월 유동화 지급 해당일**: ‘라’에도 불구하고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유동화 금액 지급절차) 제1항에 따른 최초 유동화 금액을 지급한 날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이내의 매월 ‘최초 유동화 금액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말합니다.

【유동화 지급 해당일 예시】

- 유동화 신청일이 2028년 3월 5일, 유동화 기간 10년, 연지급 신청시 예시
- 최초 유동화금액 지급일 : 2028년 3월 5일

유동화 지급 해당일 : 2029년 3월 5일, 2030년 3월 5일, 2037년 3월 5일

· 유동화 신청일이 2028년 3월 5일, 유동화 기간 10년, 월지급 신청시 예시
최초 유동화금액 지급일 : 2028년 3월 5일

매월 유동화 지급 해당일 : 2028년 4월 5일, 2028년 5월 5일, 2038년 2월 5일

· 해당연도의 유동화 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 예시
유동화 신청일이 2028년 2월 29일인 경우, 2029년의 유동화 지급 해당일은 2029년 2월 28일
⇒ 2029년 2월 29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말일을 유동화 지급 해당일로 함

제3조【유동화 신청 및 취소】

- ① 이 특약은 이미 체결된 주계약이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인 경우에 한해 부가하여 적용하며, 계약자는 유동화 신청일에 주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유동화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중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2. 유동화 신청시점에 주계약 사망보험금(보너스적립액, 중액보험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보험사고 발생 시 사망보험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이 9억원 이하인 계약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4. 신청시점 피보험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5.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중액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유동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기타 계약자가 유동화 신청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③ 계약자는 제1회 유동화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동화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고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신청일로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청 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주계약 약관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주계약의 기명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에게 유동화 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유동화 신청 시에 제공될 약관 및 신청서(계약자 보관용)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신청서(계약자 보관용)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이 특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조【유동화 중지 및 재신청】

- ①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중 언제든지 유동화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유동화를 중지하고, 유동화 금액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6조(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매월 유동화 금액을 지급하던 중 계약자가 유동화 중지를 신청하여 유동화된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비율로 할인하여 계약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유동화 중지 신청일 또는 유동화 종료 이후에 유동화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3조(유동화 신청 및 취소)를 준용합니다. 이 때, 제6조(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 및 유동화 기간 등의 변경이 가능하며, 제5조(유동화 금액의 지급사유)에 따라 유동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유동화 금액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유동화 신청일부터 최종 유동화 지급 해당일까지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약정한 유동화 금액(‘별표1 유동화 금액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6조【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계약자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유동화 대상금액과 유동화 기간(연단위)을 최소 2년부터 최대 ‘주계약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중국연령까지의 잔여기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유동화를 재신청하는 경우 유동화 대상금액은 최초 신청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에서 유동화 등으로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 유동화 종료시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최초 신청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 및 유동화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유동화 금액의 총액’은 유동화 신청시점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유동화 금액의 총액】

유동화 신청시 계산한 유동화 금액의 합계

- ④ 제1항에 따라 유동화 재신청을 하는 경우, ‘재신청 유동화 금액의 총액’은 유동화 재신청시점 주계약의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재신청 유동화 금액의 총액】

유동화 재신청시 계산한 유동화 금액 합계로 재신청 이전의 유동화를 통해 수령한 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유동화 관련 용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로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다르게 정한 경우 주계약을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frac{\text{감액 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text{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times \frac{\text{감액 후 보험가입금액}}{\text{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감액 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이 특약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frac{\text{감액 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text{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times \frac{\text{감액 후 보험가입금액}}{\text{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감액 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이 특약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frac{\text{인출 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text{인출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times \frac{\text{인출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이 특약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frac{\text{인출 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text{인출 전 추가계약자적립액}} \times \frac{\text{인출 후 추가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추가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이 특약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 ⑤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을 유동화 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유동화 기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며,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유동화 금액으로 하여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매년 감액할 금액】

$$\text{매년 감액할 금액} = \frac{\text{유동화 대상금액}}{\text{유동화 기간(년수)}}$$

예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유동화 대상금액 8천만원,
유동화 기간 10년 선택시

$$\text{매년 감액할 금액} = \frac{80,000,000\text{원}}{10\text{년}} = 8,000,000\text{원}$$

유동화 종료후 주계약 가입금액 = 20,000,000원

- ⑥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유동화 금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매월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자는 유동화 신청일 이후 유동화 기간 중에는 유동화 대상금액 및 유동화 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7조【유동화 금액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3조(유동화 신청 및 취소)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유동화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유동화 지급 해당일부터 유동화금액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주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8조【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 ①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서 제6조(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른 ‘매년 감액할 금액’이 유동화 기간 동안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 ②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동안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주계약 보험료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 변경되는 제도 및 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유동화 지급 해당일까지 유동화 지급이 완료되거나 제4조(유동화 중지 및 재신청) 제1항에 따라 유동화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계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9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유동화 신청일부터 유동화 종료일과 특약의 소멸일 중에 빠른 날까지로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재신청일부터 재신청 이후 유동화 종료일과 특약의 소멸일 중에 빠른 날까지로 합니다.

제10조【특약의 소멸】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유동화도 종료되며 이 특약은 소멸되고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유동화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유동화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유동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던 중 특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된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하여 계약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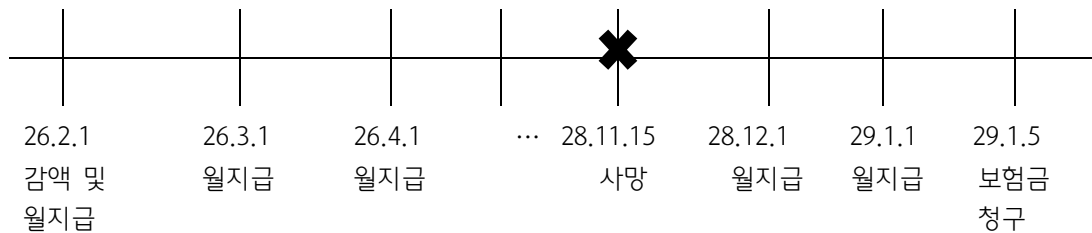
2026년 2월 1일 유동화 신청(20년)하여 매일 1일마다 월지급하다가 2028년 7월 15일 사망하고, 사망 당일에 사망보험금 청구



⇒ 2028년 2월 1일 기준으로 감액하여 남은 사망보험금과 미지급된 유동화 금액(6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고 소멸

【예시】

2026년 2월 1일 유동화 신청(20년)하여 매일 1일마다 월지급하다가 2028년 11월 15일에 사망하고, 2029년 1월 5일에 사망보험금 청구



⇒ 2028년 2월 1일 기준으로 감액하고 남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단,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감액 및 유동화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유동화 금액(2개월분) 차감)하고 소멸

제11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유동화 신청 계약의 장래 유동화 종료시점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별표1 유동화 금액 지급기준표

금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유동화 금액	피보험자가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동화 기간 동안 매년 감액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

(주)

1.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서 제6조(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른 ‘매년 감액할 금액’이 유동화 기간 동안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2. 유동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월의 유동화 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유동화 지급 해당일로 합니다.